

#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정관

[정관 제1호, 2021. 08. 27. 제정]

[정관 제2호, 2022. 02. 14. 개정]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재단은 「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재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3.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
4. 문화예술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
5.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·관리
6. 각종 문화공연·축제 추진 및 지원
7.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
8.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9.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
10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11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
12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
13. 그 밖에 지역문화·관광 진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

제6조(임원)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대표이사 1인
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)
4. 감사 2인

제7조(이사장)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, 이사회를 소집 및 이사회 업무 통할하고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제8조(대표이사)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재단 설립시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대표이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제9조(이사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청장
2.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
3.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장 <신설 2022. 02. 14.>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10조(감사) 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하며,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
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

③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.

**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** ① 재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7명, 비상설로 하되, 구청장과 재단이사회가 추천하는 각 2명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문화예술·관광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
2. 4년제 대학 문화예술·관광 관련학과 교수
3. 문화예술·관광분야 관련 법인·기관 시설의 장 및 임원
4.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5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, 세무사
6.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 시까지로 정한다.

⑤ 재단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⑦ 위원회는 이사 임기만료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구성한다.

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자를 심사하여 이사장에게 임원후보로 추천한다.

⑩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추천 해야 한다.

⑪ 임원 후보의 선정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임기)**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③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선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새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징계 및 해임)**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해 임원을 직위 해제,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4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
③ 이사회에서 임원의 징계를 심의할 경우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.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 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**제15조(직무대행)**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구의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재단의 조직 및 정원 규정에 의한 직제 순서에 따라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이사회

**제16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17조(회의)**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 대표이사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18조(의결 정족수 등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19조(서면의결)**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이사회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, 재산의 취득·처분·관리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,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선임·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법령,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21조(의결 제척)**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**제22조(회의록)**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**제23조(재산)**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 당시 구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
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
3.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재산
4.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
5.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
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
3. 기부금
4. 기타 수익금 등

④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“별지” 와 같다

**제24조(재산의 관리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기부금품의 모집)**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품 모집·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02. 14.>

**제26조(기금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중구문화재단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

③ 적립기금은 구의 출연금, 기부금, 재단사업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.

④ 운용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,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, 기부금,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.

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02. 14.>

**제27조(기금운용심의회)** ① 재단은 기금관리·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

2.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

3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
4.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

5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기금운용심의회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02. 14.>

**제28조(회계연도)**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에 준한다.

**제29조(사업계획 등의 작성)** 재단은 다음년도 사업계획·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경비의 충당)**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소득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, 기부금, 재단의 사업수입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.

③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**제31조(사업의 대행)**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**제32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잉여금의 처리)**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**제34조(임원의 보수)**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5조(감독·보고·감사)**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감사의 실시)**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본부

**제37조(조직 및 정원)**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8조(본부장)** ① 본부장은 재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 
② 본부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 
③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, 계약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9조(직원의 임명 등)** 직원의 임명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

**제40조(공무원 파견요구 등)**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1조(자문기구)** 재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2조(수당의 지급 등)** 제41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43조(정관의 변경)**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4조(해산)**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(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된다.

**제46조(시행규정)**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.

**제47조(광고방법)**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재단 및 구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에 게재한다.

## **부 칙** <제1호, 2021. 08. 27.>

**제1조(시행일)** ①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회계연도)**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**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## **부 칙** <제2호, 2022. 02. 14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